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9. 9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 고유의 역사·문화·예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 등(안 제4조)
-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
-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(안 제6조)
- 운영 및 지원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시행규칙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의 역사·문화·예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.
-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,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청 별로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역 향토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,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지원청 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향토사 교육을 추진하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